기준일로부터 금번 신탁보수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2. 중도해지수수료

가. 징구대상 : 계약체결일로부터 중도해지신청일까지 1년 미만 계약에 한함

나. 계산기준일 : 중도해지신청일

다. 징구일 : 중도해지일

라. 수수료 : 계산기준일 전일의 신탁재산 평가액 × 1.0 %

마. 징구방법 : 신탁재산에서 징구

3. 계약이전수수료

가. 징구대상 : 계약이전신청계좌

나. 징구일 : 계약이전일

다. 수수료 : 15,000 원

라. 징구방법 : 신탁재산에서 징구

4. 제1호 내지 제2호의 퇴직연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주소 :

성명 : (인)

수 탁 자 주소 :

성명 : (인)